

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2. 6. 14 선고 2021가단130895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곡

담당변호사 김민섭

변 론 종 결 2022. 4. 12.

판 결 선 고 2022. 6. 14.

주 문

1.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1.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. 8. 15. 체결된 매매계약을 24,972,891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.
2. 피고는 원고에게 24,972,89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원고는 D에 대하여 ①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18가소201625 손해배상(기) 사건의 확정판결과 ② 위 사건에 관련된 같은 법원 2021카합1032 소송비용액확정 사건의 확정된 결정에 따른 채권이 있는바, 위 판결 및 결정에 따른 판결원리금 합계액은 24,972,891원이다. 피고는 D의 자녀로서, C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(이하 ‘이 사건 부동산’이라 한다)을 2017. 8. 15. 매수하여 2017. 10. 31.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2, 5, 14호증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판단

원고는 D의 채권자이므로, 그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사해행위취소를 구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인 D이 한 법률행위(민법 제406조 제1항 참조), 즉 수익자라고 지목된 피고와의 사이에 D이 한 어떠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여야 한다. 그런데 원고는 피고가 C과 한 법률행위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바, 그 주장 자체로 위 매매계약은 수익자가 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(대법원 2004. 8. 20. 선고 2004다21923 판결 등 참조). 따라서 피고를 상대로 위 매매계약의 취소 및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김성환

별지